

특집 ▶ 축산계열화법·축산업허가제 집중 탐구

# 축산업 허가제 시행, ‘무허가축사 양성화’ 우선해야

오는 2월 23일이면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된다. 업종별, 사육규모별로 도입시기에 차이가 있고, 1년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무허가·미신고 축사시설을 보유한 축산농가가 전체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축산업 선진화라는 축산업 허가제의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의 허가뿐 아니라 건축법, 가축분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농가입장에서는 제도의 시행 자체만으로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무허가축사에 대한 양성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농식품부에서도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현장의 지배적인 목소리다.

축산업계의 우려 속에 시행되는 축산업 허가제를 살펴봤다.

## 1. 선진화된 축사관리위해 도입



이 한 태 기자  
농수축산신문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 축산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입음과 동시에 선진화된 방역관리 시스템 도입에 절감했다.

이에 따라 2011년 2월 생산자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 2차례의 워크숍과 4차례의 지역설명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같은 해 5

월 6일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핵심 제도가 바로 '축산업 허가제' 도입이다.

기존 축산업 등록제만으로는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 억제와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으며 친환경축산으로 전환키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가 지난해 2월 22일 공포됐다. 그리고 오는 23일 법 공포 1년이 경과해 본격적으로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올해 허가 대상농가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2월까지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2년 2월부터 즉시 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은 사육규모에 따라 올해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한 올해에는 전업규모의 2배 수준인 축사면적 2500m<sup>2</sup>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도입하며 2014년에는 축사면적 1400m<sup>2</sup> 이상인 전업농가, 2015년에는 축사면적 950m<sup>2</sup> 이상인 준전업농가, 2016년에는 축사면적 50m<sup>2</sup> 이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2.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마릿수, 의무교육 등 허가기준 충족해야

축산업 허가제 시행으로 축산농가는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마릿수, 의무교육 등 네 가지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위치기준의 경우 주거 밀집지역, 도로 인근, 도축장·사료공장·집유장 등 축산관련 시설과의 일정거리 이내는 신규허가가 제한된다. 닭의 경우 6만마리 이하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80m, 9만마리 이하는 250m, 9만마리 이상은 320m의 거리 제한이 있으며, 지방도 이상 도로 30m이내, 축산관련시설 500m이내 등도 접근이 불가능하다.

시설기준은 방역 및 소독시설, 축사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소독조, 소독시설, 울타리, 담장, 출입통제 안내판, 출입자 방문기록부 등이 축종별·사육규모별로 차별 적용된다. 사육규모가 적은 농가는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시킨다는 취지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마릿수는 '가축사육 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적용, 산란계는 케이지는 마리당 0.05m<sup>2</sup>, 평사는 마리당 0.11m<sup>2</sup>로, 산란육성계는 케이지에서 마리당 0.025m<sup>2</sup>를 적용했다. 육계 무창계사는 m<sup>2</sup>당 39kg, 개방계사는 m<sup>2</sup>당 강제환기 36kg, 자연환기 33kg를 적용했으며 케이지는 마리당 0.046m<sup>2</sup>를 적용한다.

의무교육은 신규농가(24시간), 허가 대상

## 특집 ▶ 축산계열화법·축산업허가제 집중 탐구

농가(사육경력 3년 이상 8시간, 3년 미만 12시간), 가축사육업 등록대상농가(6시간)로 구분되며, 허가대상은 2년 주기로, 가축사육업 대상농가는 4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에는 허가나 등록이 제한되거나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3. 무허가·미신고 축사시설 보유농가 49.5%

이처럼 농식품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방역시설 등 시설기준안을 충족시키는 게 핵심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현실은 이와 조금 다르다. 농식품부로부터 허가를 얻었다 해도 건축법이나 가축분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강제이행부담금 등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실제 육계의 경우 흙바닥에서 사육해 축사로 인정받지 못하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도 할 수 없어 무허가나 미신고 축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건폐율 적용도 무허가축사를 양산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축산업 선진화 대책에서 허가제상의 시설기준을 충족시킨다 해도 건축법은 농식품부가 아닌 시·도 자치단체



조례를 기준으로 하며 이 기준은 시·도마다 달라 농가는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축법기준으로 건폐율 60%의 축사를 만들었다 해도 해당 시·도의 건폐율 기준이 없거나 이보다 낮은 60% 미만일 경우 허가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육거리 제한기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의 권고보다 강하게 설정, 현장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렇다보니 우리나라 축산농가 가운데 무허가나 미신고 축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축산농가 수는 전체의 반이 넘을 수 있다는 추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농식품부 국정감사 종합국감에서 홍문표 의원(새누리, 홍성·예산)도 “우리나라 축산농가 가운데 49.5%가 무허가·미신고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며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맞춰 무허가축사 양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4. 농식품부, 점진적·단계적 양성화 방안 추진

농식품부는 같은 현실을 감안해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과 함께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양성화시키기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 접근으로 농가 스스로 무허가축사를 개선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자체 건폐율을 건축법 기준인 6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기장), 광주(광산), 울산(울주), 제주(서귀포), 대구(달성), 대전(서구·유성) 등이 이를 따르기로 했으며 아직 건폐율 기준이 없거나 60%보다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는 축사용 가설 건축물 범위를 확대해 건폐율 상향조정 효과를 거둔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축사용 가설 건축물 벽과 지붕에 많이 쓰이는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와 콘크리트 바닥도 축사용 가설 건축물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축산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가축분뇨법시행령 개정으로 축사 바닥에 비닐을 깔고 왕겨 등 수분조절제를 도포하면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가축분뇨관리업자 등에 전량 위탁처리하면 퇴비저장시설 등에 대한 설치를 면제토록 한다. 이를 통해 무허가, 배출시설 미신고 축사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사육거리제한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유예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 5. 특별법 제정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이 같은 농식품부의 노력에도 현장의 우려

## 특집 ▶ 축산계열화법·축산업허가제 집중 탐구

전문가들은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에 무허가축사를 연계하는 등 충분한 자금 지원으로 근본적인 양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책임한 지원을 막기 위한 저리용자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가 깊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안전을 고려해 설계된 일반 건축법이 축사시설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농가 무허가 축사원인을 살펴보면 1위가 ‘허가조건 미충족’으로 전체의 33.2%에 달했으며 2위가 ‘행정절차 복잡 및 비용과다’(27.2%)였다. 그리고 ‘처벌부재’(8.5%)와 ‘허가조건 충족을 위한 비용과다’(7.9%) 순이었다.

농가입장에서 허가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절차나 비용 부담이 크다는 반증이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금이 지원된다고는 하지만 무허가축사 양성화 방안과는 연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에 무허가축사를 연계하는 등 충분한 자금 지원으로 근본적인 양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책임한 지원을 막기 위한 저리용자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축사시설을 추인을 통해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에 등재토록해야 한다는 주장

도 제기된다. 추인을 통해 양성화 기준을 설정하고, 자격농가 중심으로 차별적용해 기준을 단계별로 설정, 무허가축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노력과 함께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관련 기준이 대부분 지자체에 의해 지역별로 설정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농가가 혼선을 겪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조해 기준을 통일,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시급하다.

포천의 한 농가는 “축산업 허가제가 지금 상태로 시행되면 자칫 대다수의 축산농가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